

#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3.  
제 안 자 : 안산시장

## 1. 개정사유

- 법정동 명칭변경 승인으로 안산시 동동, 북동, 남동이 안산시 대부동동, 대부북동, 대부남동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대부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

기 관 명	소 재 지
대 부 동	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제1항 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
제2항 -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 
얻어야 한다.

나. 소요예산 : 없음.

##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소재지) "별표" 중 "대부동"의 소재지를 "별지"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## 시 청 및 동 사 무 소 소 재 지

기 관 명	소 재 지
대 부 동	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	개 정 (안)	
기관명	소재지	기관명	소재지
안산시청 ~반월동	(생 략)	안산시청 ~반월동	(현행과 같음)
대부동	안산시 북동 467번지	대부동	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
안산동	(생 략)	안산동	(현행과 같음)